

05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PLA 제품의 품목 분류 및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바이오 플라스틱 PLA 제품의 품목 분류 및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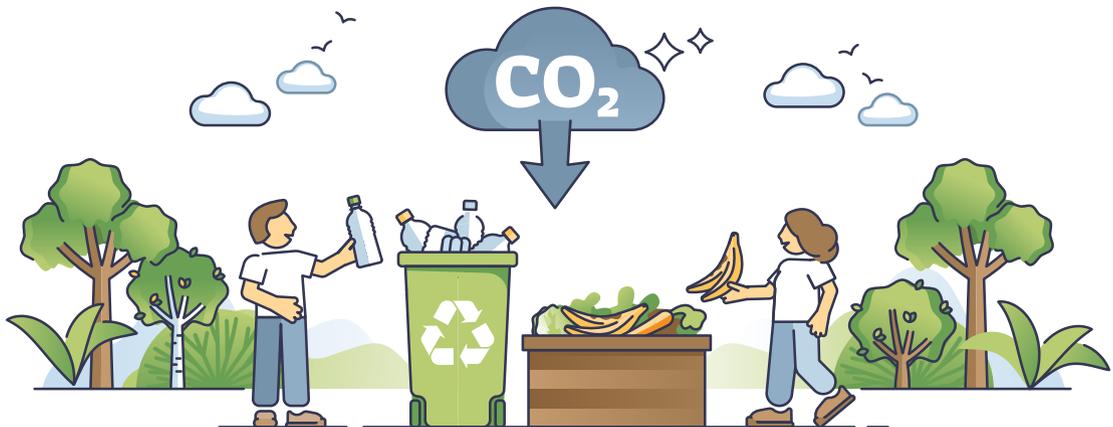
이홍로
로한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1. 들어가며

최근 지구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례 없는 폭염과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장기간의 열대야를 경험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해·한파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며 기후 위기를 겪고 있다. 2023년 IPCC¹⁾에서 발행한 제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의 온도를 1.09도(0.95도~1.20도) 상승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각 나라에서도 환경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ESG 기업 경영 방침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들 역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 제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중에 하나로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과 그에 따른 폐기물, 소각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해야 할까? 지금 당장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생활에서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많을 것이다. 이에 차선책으로 일반적인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고,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대체 제품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체 가능한 플라스틱으로는 PLA 및 PBAT²⁾ 등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있으나, 본 리포트에서는 PLA 제품에 대한 품목 분류와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과 예시를 제공하고자 한다.



1)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 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2.

PLA 제품의 품목 분류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가. PLA 정의

PLA란 Poly Lactic Acid의 약자로,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글루코스(포도당)를 발효 및 정제하여 가공한 젖산(Lactic Acid)을 원료로 만든 바이오플라스틱을 말한다. PLA 제품의 장점은 생물에 의한 생분해가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하며 가공성이 우수하다. 또한 내열 온도 및 내한 온도가 일반 플라스틱과 유사하여 제품 활용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나. PLA 제품의 활용 분야

PLA 제품은 포장 상자, 식품용 기구 & 용기, 일회용 제품, 의료용 녹는 실 및 수술복, 농업용 부직포, 화장품 첨가제, 3D 프린터 재료 등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 PLA 제품의 품목 분류

(1) 포장 상자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운반·포장 용기,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분류하고, 해당 호의 품목 분류 체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제3923호의 품목 분류 체계

품목번호 (HSK)	품명	간이정액 환급액
10 000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70원
21 0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 [콘(cone)을 포함]	20원
29 0000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대 [콘(cone)을 포함]	30원
3923 30 000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10원
40 0000	스풀(spool)·콤파스(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10원
50 000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20원
90 0000	기타 물품	20원

제3923.10호에서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운반하거나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따라서 포장 상자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3.10-0000에 분류한다. 참고 사항으로 제조 후 수출



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제도³⁾를 통해 수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반드시 환급 제도를 활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2) 식품용 기구 & 용기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등을 분류하고, 해당 호의 품목 분류 체계는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제3924호의 품목 분류 체계

품목번호 (HSK)		품명	간이정액 환급액
3924	10 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10원
	90 1000	비누접시와 통	-
	90 2000	탁상보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	-
	90 9000	기타 물품	10원

제3924.10호에서는 식탁용품으로 찻잔이나 커피잔·접시(plate)·수프 그릇·샐러드 그릇·각종의 접시와 쟁반·커피포트·티포트·설탕 사발·맥주잔·컵·소스보트·과일사발·양념병·소금저장 그릇·겨자포트·달걀 컵(egg cup)·티포트스탠드(teapot stand)·테이블매트·칼받침·서비에트 링(serviette ring)·칼·포크·스푼 등을 분류한다. 따라

3)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경우 수출금액(FOB)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하는 제도를 말함



서 식품용 기구 & 용기 제품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4.10-0000에 분류한다.

제3924호 관련 내용으로 ‘폴리우레탄 스폰지로 만든 수세미(Sponge dish scrubber)’의 경우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⁴⁾으로 기존에 HS CODE : 제3924.10-0000호에서 제3924.90-9000호로 품목 분류 변경 고시되었다.

3. PLA 제품의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가. 포장 상자 (제3923.10호)

(1)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 기준

포장 상자에 대한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포장 상자의 원산지 결정 기준

연번	FTA 협정	원산지 결정 기준	약어
1	한-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2	한-EU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C 50%
3	한-인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SH + RVC 35%

(2) FTA별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① 한-미국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원산지 결정 기준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말하며, 약어는 CTH로 표시한다. 완제품인 포장 상자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4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4단위가 서로 다르면 원산지 판정 결과 역내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 세번변경의 의미는 HS CODE가 변할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② 한-EU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원산지 결정 기준인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4) 제2024-23호 (2024.05.29.) - 종전 공문 : 감정 22701-1711 (1992.08.14.)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은 부가가치기준 중 MC법을 말하며, 약어는 MC 50%로 표시한다. 해당 기준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완제품인 포장 상자의 공장도가격(EXW)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50% 이하이면 원산지 판정 결과 역내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 부가가치비율 산정 방식은 (비원산지재료비/EXW) X 100% 이며,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역내산 판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③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원산지 결정 기준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는 6단위 세 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RVC법을 말하며, 약어는 CTSH + RVC 35%로 표시한다. 해당 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기준이다. 첫째로 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인 포장 상자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6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6단위가 서로 달라야 하고, 둘째로 부가가치기준은 포장 상자의 본선인도가격(FOB)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제외한 포장 상자의 본선인도가격(FOB)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35% 이상으로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 판정 결과 역내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 부가가치비율 산정 방식은 $\{(FOB - \text{비원산지재료비}) / FOB\} \times 100\%$ 이며,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역내산 판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나. 식품용 기구 & 용기 (제3924.10호)

(1) 한-중국 FTA 적용 사례

PLA 제품으로 밀폐 용기를 한국에서 제조하고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가정하에, 다음 [표 4] B.O.M 예시를 제시하고 한-중국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해설하고자 한다.



표 4 PLA 밀폐 용기 B.O.M 예시

Bill of Materials

- 완제품 품명 (Description of goods) : PLA 밀폐 용기
- HS CODE : 3924.10
- 적용협정 (Applicable FTA) : 한-중국 FTA
- 원산지결정기준 (Rules of Origin) :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연번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입증서류
1	폴리락타이드	3907.70	미상	세금계산서
2	안료	3206.19	미상	수입신고필증
3	잉크	3215.19	미상	수입신고필증
4	플라스틱제 판	3921.90	미상	세금계산서
5	합성고무	4002.19	미상	세금계산서
6	카톤박스	4819.20	미상	세금계산서
7	매뉴얼	4901.10	미상	세금계산서

(2)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① 한-중국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원산지 결정 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으로 비원산지재료(원산지 '미상')인 연번 1~7번까지 원재료와 완제품인 PLA 밀폐 용기 HS CODE 3924.10과 비교하여 서로 다른지 확인한다. 검토 결과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상이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해당 예시의 원산지 판정은 역내산으로 판정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으로 판정 시에 핵심은 비교 대상이 원산지재료가 아닌 비원산지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를 비교하는 것이다.

②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대상⁵⁾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에 일반적으로 B.O.M 및 제조공정도 등 다양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중국, 아세안, 베트남 FTA 및 RCEP 에서는 제39류 플라스틱 일차제품에 안료나 가소제

5) FTA 관세법 고시 제26조 제5항

등을 배합한 후 용융(melting)·사출(injection)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경우 원산지 소명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출만으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며 원산지증명서를 간이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4.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바이오를 기반한 생분해성 PLA 제품에 대한 품목 분류 및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에 대해 알아보았다. 품목 분류의 경우 수입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입 요건, 원산지 표시 방법 그리고 수출 요건, 간이 정액 환급 등과 관련성이 깊다. 또한 FTA 원산지 판정의 시작점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주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품목 분류 이슈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유권 해석을 받아 무역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를 권해드린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처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작은 실천도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시작으로 친환경 제품 사용 등의 노력으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변화를 통해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이제부터라도 변화를 통해 지구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FTA TRADE REPORT